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88
------------	-------

발의연월일 : 2019. 4. 24.

발의자 : 박완주 · 김성수 · 박정

정인화 · 송갑석 · 박선숙

박주현 · 윤관석 · 윤일규

신창현 · 강창일 · 백혜련

금태섭 · 고용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하여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거나, 이를 국가를 여행하는 출입국자들에게 가축전염병 현황과 출입국시 신고의무 및 소독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 여행객의 경우에도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지고 온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 병의 유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및 제60조제2항제13호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방문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이하 “가축전염병 정보”라 한다)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p>	<p>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u>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u></p> <p><u>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방문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이하 “가축전염병 정보”라 한다)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u></p> <p><u>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u></p>

	<p><u>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